## 《 서울식물원 주차장 할인 내용》

- 1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요금의 80% 할인
- 가.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등
- 2. <u>경차</u>(레이, 캐스퍼 등), 전기차 등 <u>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의 50%를 할인</u>할 수 있다.
- 3. <u>모범납세자</u>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<u>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</u> 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은 발행일로부터 <u>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</u>한다.
- 4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소지자(두자녀 이상)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<u>50%를 할인</u>할수 있다
- 4의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할인한다.
- 5. 「<u>보훈보상대상자</u>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**50%를 할인**한다.
- 6. 「<u>5、18민주유공자</u>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5. 18민주화 운동 부상자</u>가 <u>5.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</u>하고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<u>1시간</u> <u>주차요금 면제 / 1시간 초과시간부터 50%를 할인</u>한다.
- 7. 「<u>보훈보상대상자</u>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<u>50%를 할인</u>한다.
- 8. 「<u>참전유공자</u>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<u>20%를 할인</u>한다.
- 9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<u>20%를 할인</u>한다.
- ※ 두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